

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

(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19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. 1.

발의자 : 송바우나 의원 외 6명

1. 제정이유

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5조)
-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관계기관 협력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~ 제9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입법예고 결과 : 붙임4(의견서)

- 제출의견 1건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(관련부서 검토의견)

붙임1

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청년” 이란 「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개별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2. “청년일자리 창출”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연결·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
2.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3.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제6조(청년일자리사업 추진·지원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상담·적성검사,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
2. 구인·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
3.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
4.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
5.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
6.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위원회)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「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행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1)

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791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. 1. 20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회

□ 수정이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,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사무로 별도의 노동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사항 중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.
-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함.

□ 주요골자

-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 사업 중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. (안 제6조제1항제6호)
-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.(안 제7조제2항)

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 중 “대행 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대행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6조(청년일자리사업 추진 ·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6.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</u></p> <p><u>7. (생략)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청년일자리사업 추진 · 지원) ① ----- .</p> <p>1. ~ 5.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6. (원안 제7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「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<u>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위원회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대행한다.</u></p>